사천시관광종합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의안번호 제33호, 2004. 9 7)

총 무 위 원 회 2004. 9. 17

1. 심사 경과

가. 2004. 9. 7: 사천시장 제출

나. 2004. 9. 7 : 총무위원회 회부

다. 2004. 9. 14: 제89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의결

2. 제안 설명(문화관광과장 정대환)

가. 개정 이유

○ 대진고속도로와 창선·삼천포대교 개통 후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우리시 관문인 사천IC 주변에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여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의 일부시설물을 민자유치로 기부채납토록 하여시의 재정 부담 경감과 민간인 참여를 촉진시켜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관광지원시설의 위치 및 규모 변경
 - · 현행 3필지 18,389㎡ → 26필지 27,872㎡

3. 관계 법령

○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4. 검토 보고 요지(전문위원 김태주)

- 본 조례는 시민과 국내·내외 관광객에게 이용 편의시설 제공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사천시관광종합지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임.
-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시의 관문인 사천IC 주변에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여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의 일부 시설물을 민자유치로 기부채납토록 하여 시의 재정 부담과 민간인 참여를 촉진시켜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재 대방동 765-3번지일원에 부지 18,389평방미터가 지정되어 유람선관광객 이용차량의 주차장 및 부대시설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쳤고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부분 없음.

5. 질의 및 답변 요지

질의위원	질의요지	답변자	답변요지
김현철 위 원	관광종합지원시설에 민자유치하고자 하는자들이 많이 참여하여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널리 홍보해야 하는데 투자 참여자가 2인뿐인 것은 홍보를소홀히 한 것 아닌가?	문화관관과장 정대환	여러 가지 홍보매채를 통하 여 널리 홍보 하였음.
	만남의광장을 만들어 놓고 이용하는사람과 차량이 없으면 무용지물임. 진입로 설치등 제 반문제를 시에서 잘 챙겨서 이용이 편리하도록 공사 지도,감 독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	진입로등 이용이 용이하도 록 최선을 다하겠음.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7. 소수 의견 : 없 음